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11(목)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2. 1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2. 19.
- 라. 상정일자 : 2010. 3. 4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가족공원 매장묘지를 자진 개장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 주고 봉안 시설 안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개장 및 화장 촉진
- 한 배우자가 봉안당·자연장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외 부부 합골 안치를 허용하여 시민편의 제공
- 6개월 미만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며, 군인(의무경찰 포함)등에 대한 화장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의사자 등이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관내 주민으로 적용(안 제2조)
-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시 관내주민으로 적용(안 제6조 및 별표 2)
- 인천가족공원 안의 묘지를 자진 개장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자연장에 대한 최초 사용료를 면제(안 제9조)
- 기존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한 배우자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외에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안치된 다른 한 배우자 합골 허용(안 제9조)
- 인천가족공원 안에 신설된 봉안당(만월당) 추가(별표 1)
- 우리시 관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무경찰 포함) 등이 사망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주민으로 적용(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와 감면을 통해 개장과 화장을 촉진하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2월 18일 제출하여 2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주요 내용

- 관내 거주 6개월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관내 주민으로 적용(안 제2조, 안제6조 및 별표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자 등이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을 한 경우와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동포 사망시 관내주민으로 사용료를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자진 개장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자연장지에 대한 최초 사용료 면제 및 한 배우자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합골 허용(안 제9조)
 -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를 자진 개장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자연장의 최초사용료에 대한 면제와 배우자 중 1인이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외 거주하다 사망한 다른 배우자의 합골을 허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신설 봉안당 추가 및 관내 의무복무 중인 군인 (의무경찰 포함)등 사망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주민으로 적용(별표1. 별표2)
 - 봉안시설(만월당 등)이 신설되어 시설의 명칭을 추가(별표1)하였으며,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중인 군인(의무경찰 등)이 사망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소가 상이하더라도 관내 화장시설 이용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장과 화장을 촉진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조례안 제9조의 “합골”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용어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과, 화장시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화장시설 및 봉안당 등 관련시설의 현황과 향후 시설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위원
 - 관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합골을 허용할 경우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자를 이용대상자로 인정한 조항과 상충되며, 기수가 많이 증가되어 시설 부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 “합골”의 용어 정의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답 변 >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부부를 합골할 경우 별도 제작된 유골함 1식에 칸을 나누어 각각 안치를 하게 되므로 1기로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설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음.
- 합골은 합장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며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흥철, 정종섭 위원

나. 반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관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나.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안시설 : 관내주민,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2. 화장시설 : 관내주민 및 관외주민

3. 자연장지 : 관내주민,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감면(다만, 보상분묘는 제외한다.)

- 가. 화장시설 : 사용료 면제
- 나. 봉안당 : 최초 10년 면제
- 다. 자연장지 : 최초 15년 면제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
1기 사용료만 징수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5조 관련)

종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 설 묘 지	비 조 성 묘 지	인천광역시 중 구영중공설묘지	인천광역시 중 구 운북동	
		" 남 구주안공설묘지	" 남 구 주안동	
		" 연수구옥련공설묘지	" 연수구 옥련동	
		" 청학공설묘지	" 청학동	
		" 남동구장수공설묘지	" 남동구 장수동	
		" 도림공설묘지	" 도림동	
		" 운연공설묘지	" 운연동	
		" 논현공설묘지	" 논현동	
		" 수산공설묘지	" 수산동	
		" 서 구경서공설묘지	" 서 구 경서동	
		" 원창공설묘지	" 원창동	
		" 가정공설묘지	" 가정동	
		" 검암공설묘지	" 검암동	
		" 원당공설묘지	" 원당동	
		" 불로공설묘지	" 불로동	
		" 왕길공설묘지	" 왕길동	
		" 대곡공설묘지	" 대곡동	
"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 부평구 부평동			
조 성 묘 지	인천광역시 서구왕길조성묘지	인천광역시 서 구 왕길동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 부평구 부평동		
공 설 화 장 시 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공 설 봉 안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공 설 자 연 장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 관련)

1.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 본 금 액			4.95m ²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m ²	21,400원	3,600원	17,800원	3.3m ² 당 1,200원

2.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 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m ²	30,000원/1년	5년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m ²	50,000원/1년	5년단위로 징수

3. 왕길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허가신청서 납부금액		
	계	사용료	관리료
4.95m ²	64,300원	15,400원	48,900원

4. 화장시설 · 봉안당 · 자연장지 사용료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 장 시 설	만15세 이상	1구당	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	4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	50,000원	400,000원		
	죽은 태아(4개월이상)	"	30,000원	300,000원		
봉 안 당	1인용	1기당	안치료	150,000원	400,000원	관외주민 사용료는 기 봉안된 관외 주민 만 적용
			재사용료	100,000원	400,000원	
			연장기간	10년(최초) 5년 6회	10년(최초) 5년 6회	
	부부용	1기당	안치료	300,000원	600,000원	
			재사용료	200,000원	600,000원	
			연장기간	10년(최초) 5년 6회	10년(최초) 5년 6회	
자연장지	수목장립	1기당	안치료	150,000원	-	
			재사용료	75,000원	-	
			연장기간	15년(최초) 5년 5회	-	

- 비고 : 1.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 (정의) -----</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관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p> <p>나.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p> <p>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p>
<p>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봉안시설 : 시설사용 신청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주민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와 출입국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p> <p>2. 화장시설 : 관내주민(단, 제9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적용) 및 관외주민</p>	<p>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① -----</p> <p>-----</p> <p>-----</p> <p>1. 봉안시설 : 관내주민,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p> <p>2. 화장시설 : 관내주민 및 관외주민</p>

현행	개정안
<p>3. <u>자연장지 : 시설사용 신청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와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u></p> <p>4. ~ 5 (생략) ② (생략)</p> <p>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관내 주민에 대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생략)</p>	<p>3. <u>자연장지 : 관내주민,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u></p> <p>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